

의안 번호	1339	【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5. 2.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5. 8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5. 12.(금)

2. 제안이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고, 의미가 모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용어를 구체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정비(안 별지 제2호서식)
 - 1) 주민등록번호 ⇒ 생년월일
- 나. 운영상 미비점 보안·개선(안 별지 제2호서식)
 - 1) 등록·재등록공인 ⇒ 등록 재등록공인
 - 2) 등록일 ⇒ 등록일(재등록일)
 - 3) 성명 ⇒ 성명 및 상호
 - 4) 교부사유 ⇒ 등록(재등록)사유
 - 5)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 란에 √표를,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 란에 √표를 한다. (신설)

4. 근거법규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,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